



거월소식



▶▶▶ 순서

<input type="checkbox"/>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안내	2
<input type="checkbox"/>	2018년 상반기 찾아가는 지역일자리센터 참여자 모집	3
<input type="checkbox"/>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4
<input type="checkbox"/>	문화누리카드 발급 받고, 혜택 누리자	5
<input type="checkbox"/>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설문조사 실시 안내	6
<input type="checkbox"/>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 안내	7
<input type="checkbox"/>	제15회 거창사과마라톤대회 접수 안내	8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학대 신고 및 학대 전담기관 안내	9
<input type="checkbox"/>	깨끗하게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은 다시 자원이 됩니다	11
<input type="checkbox"/>	2018년 경남 청년EG 사업	13
<input type="checkbox"/>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14
<input type="checkbox"/>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됩니다	15
<input type="checkbox"/>	사·청각 장애인에게 방송수신기(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16
<input type="checkbox"/>	소화기·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우리집 화재걱정 뚫!	17
<input type="checkbox"/>	국정홍보만화(담금주,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기)	19
<input type="checkbox"/>	국정홍보만화(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20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안내

- 통계청·경상남도 및 거창군에서는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 활동, 경영 실태 등을 파악하여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과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광업·제조업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사시기는 2018년 6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이며, 동 조사기간 중 거창군 공무원 및 통계조사원이 해당 업체를 방문 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업체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비밀이 절대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조 사 개 요

- 조사대상: 관내에서 2017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2107년 12월 말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 조 사 명: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 조사기준일: 2017. 12. 31.
- 실시기관: 통계청·경상남도·거창군
- 조사시기: 2018. 6. 20.(수) ~ 7. 24.(화)
- 조사방법: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2018년 상반기 **찾아가는 지역일자리센터** 참여자 모집

□ 사업내용

- 사업인원: 일반인 40명(선착순 모집)
- 방문일자: 2018. 6. 29.(금)
- 방문기업: (주)두인, (주)코리아엘텍, 서울우유거창공장, (주)GFS 등 4개소
※ 방문 기업체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내 용: 관내 기업체를 방문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

□ 신청대상

- 만18세 이상 ~ 만50세 미만 자
※ 참여자 모집 접수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창군인 자 우선 선발
- 구직등록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자

□ 모집일정

- 접수기간: 2018. 6. 18 ~ 6. 28까지
- 참여 대상자 발표: 2018. 6. 28.(목)

□ 참여 신청서 접수

- 접수방법: 본인 직접방문(9:00~18:00, 토·일요일 제외)
- 접수장소: 거창군청 경제교통과(3층) 일자리총괄담당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니 물 깊이를 알고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한다.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을 먹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물놀이 안전수칙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팔-얼굴-가슴)부터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는 몸을 따뜻하게 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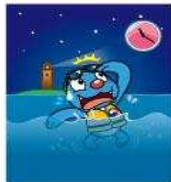
물이 깊어지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 NO



수영능력 과신은 금물, 무모한 행동 NO



장시간 수영 NO,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 NO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



구조 경험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 NO, 함부로 물에 뛰어들면 NO



가급적 튜브, 장대 등 주위 물건을 이용한 안전구조

A-07

문화누리카드 발급 받고, 혜택 누리자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향유를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라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받자!

※ 6세 이상 가능(2012.12.31. 이전 출생)

지원금 **7**만원

✓ 거창군 사용처

- ◆ 영화관(메가박스 거창) ◆ 서점(홍익서점, 덕유문고, 기독교백화점)
- ◆ 음반(도레미음향소리사, 제일레코드사) ◆ 사진관(내모습사진관, 새한스튜디오, 박상진스튜디오)
- ◆ 숙박(WHO, 파티아모텔 팔레스모텔 시에프모텔 샵모텔 천오모텔 경호장여관 월드-모텔 씨에스타 펜션)
- ◆ 여행(거창버스터미널, 거창관광(주), 거창시민관광, (주)헤럴드여행사, (주)대성항공여행사)
- ◆ 기타(백두산천지온천,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가남정보화마을, 서면정보화마을, 삼천리자전거거창점)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있어요



✓ 문의 및 발급처: 각 읍·면 사무소

자료제공 : 거창군 문화관광과 ☎ 940-3414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설문조사 실시 안내

- 기 간: 2018. 6. 4.(월) ~ 7. 6.(금)
- 장 소: 거창군 12개 읍·면
- 대 상: 600세대 이내 무작위 선정 (가구 직접 방문)
※조사요원 명찰패용과 신분증 지참
- 조사내용
 - 지역주민의 보건사업요구도, 공공의료시설 만족도·이용현황
 - 건강문제(금연, 음주, 감염병, 노인질환) 등
- 조사기관: (사) 21세기 산업연구소 연구기획실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 근 거: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 수립기간: 2019 ~ 2022년(4년)
- 내 용
 -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세부사업계획 등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 안내

□ 개 요

- 정 의: SFTS 바이러스에 의한 중증 열성 바이러스 질환
- 매 개 충: 작은소피참진드기, 개피참진드기, 일본참진드기 유충 등
- 전파경로: 감염된 매개체가 사람을 물어 감염
- 고위험군: 농업종사자, 야외작업자 등
- 유행시기: 6월 ~ 10월 (넓게는 4월 ~ 11월)

□ 임상적 특성

- 잠 복 기: 1~2주(6~14일)
- 증 상: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혈소판 감소 등

□ 치 료

- 진드기에 물린 후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치료

□ 예방수칙

- 진드기에 물리지 않기
- 야외활동 시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 작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 잘하기(긴옷, 장화)
- 야외활동 후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샤워나 목욕하기
- 진드기가 몸에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제15회 거창사과마라톤대회 접수 안내

□ 대회요강

- 일 시: 2018. 9. 9.(일) 10:00 ~ 12:00
- 출발장소: 스포츠파크 내 종합운동장
- 주최/주관: 거창군/거창군 체육회
- 종 목: 하프, 10km, 5km(건강달리기)
- 코 스

종목	주요 코스	비고
하프	종합운동장⇒아월교⇒월천초⇒원동삼거리⇒남산마을(반환점)⇒종합운동장	
10km	종합운동장 ⇒ 아월교 ⇒ 사마교(반환점) ⇒ 종합운동장	
5km	종합운동장 ⇒ 아월교 ⇒ 월천초 ⇒ 태경농산 앞(반환점) ⇒ 종합운동장	

□ 접수안내

- 접수기한: **2018. 7. 27. 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http://gafmarathon.com>
 - 전화 접수: ☎ 940-3927(거창군 체육회)
- 참가비 및 기념품

종 목	참가비(원)	참가 기념품 증정	비고
하프	30,000	거창사과(3kg), 배번호, 책자, 완주메달, 기록증	
10km	25,000	"	
5km(일반)	15,000	거창사과(1개입), 기념T, 배번호, 책자, 완주메달	
5km(학생)	10,000	"	

자료제공 :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 940-8762

장애인 학대 신고 및 학대 전담기관 안내

(자료제공 :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 055-211-5114)

- ❖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응급구조사 등 21개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신고의무자로 규정(「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하고 있음.

□ 장애인 학대

-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나 방임 등을 말하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에서 ‘금지행위’를 규정
- 장애인 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언어적·비언어적 방식으로 참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성매매 등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고, 노동력 착취 등 방법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금지 행위	벌칙
제1호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2호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상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폭행)
제2의2호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호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호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호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호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호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애인 학대 신고

-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 신고 전화번호 : 1644-8295(9시 ~ 18시 운영)
 - 범죄 신고 : 112
- 21개 직종의 종사자가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의무 위반시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장애인 학대 신고 전담기관 :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권리옹호 목적으로 2017. 9. 27.부터 설치·운영되는 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함.

지역	주소	전화
경남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85, 210호(중앙동, 리제스타워)	055-603-8295

-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 장애인학대 현장조사
 - 피해장애인 응급조치
 - 상담 및 사후관리
 -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피해장애인 보호 및 피해회복,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깨끗하게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은 다시 자원이 됩니다.

(자료제공: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055-211-6646)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배출하면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 되지만, 이물질로 오염된 재활용품은 쓰레기로 처리되므로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깨끗하게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핵심 4가지

‘비운다’, ‘행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요령

- 폐비닐류는 깨끗한 것을 모아서 배출하고, 음식물 등 이물질로 오염되어 제거가 힘든 폐비닐만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스티로폼은 상자의 경우 테이프나 운송장, 상표 등을 제거한 뒤 깨끗한 상태로 배출
- 컵라면 용기나 음식물 포장재는 깨끗하게 씻은 상태로 배출 등

□ 홍보사항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게시판, 마을회관 게시판에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요령 게시하여 주민 홍보 실시
- 각종 행사, 회의 시 교육 및 홍보 실시
-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한 적극 홍보 실시

붙임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요령

□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용기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배출	이물질, 음식물 등은 닦거나 헹궈서 배출	라벨 등의 다른 재질 부분은 제거하여 배출	종류별, 색상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함으로 배출
			

□ 플라스틱·비닐류 등의 분리배출 요령

구 분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품 배출 사례	
		○	X
플라스틱용기 (페트병 등)	음식물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은 제거하여 압착하여 배출		
플라스틱류 (기 타)	다른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단, 알약 포장재, 카세트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 등으로 배출		
비닐류 (필름류)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었으면 씻어서 배출하며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		
발포합성수지 (스티로폼)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이물질이 묻었으면 씻어서 배출 TV, 냉장고 등 포장·운반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		

2018년 경남 청년EG(Employment Guide) 사업

(자료제공 : 경제통상국 일자리창출과 ☎ 055-211-3334)

경남 청년EG(Employment Guide) 사업이란

경남지역 거주 청년구직자에게 전문적·체계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희망 취업처를 알선하여 취업을 손쉽게 달성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

□ 사업내용

- (주관/시행) 경상남도 / (주)제니엘
- (참가대상) 도내 주소를 둔 만 34세 이하 청년구직자
- (모집인원) 420명
- (운영기간)
 - 참여자 모집 : 2018. 5월 ~ 9월
 - 취업상담 및 전문교육 : 2018. 6월 ~ 10월
 -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 2018. 6월 ~ 2019. 3월

□ 취업지원서비스 내용

- (1단계) 집단상담(24시간) 및 개인상담(6시간) 운영
- (2단계) 전문교육(개인상담 이수자 중 전문교육이 필요한 참여자)
- (3단계) 취업알선(고용정보제공, 직무교육, 취업처알선, 기업탐방)

□ 참여신청 문의

- 경상남도 일자리창출과(☎211-3334, undine0000@korea.kr)
- (주)제니엘(☎714-8056, 9thcld@zeniel.co.kr)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02-2100-3077)

- 오는 7월 17일은 제70주년 제헌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각 가정에서는 7. 17.(화)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 있음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태극기의 구입 》

-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됩니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1.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됩니다.

- 지급 대상 :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0~71개월, 최대 72개월간 지급)으로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3인 가구 (1자녀)	4인 가구 (2자녀)	5인 가구 (3자녀)	6인 가구 (4자녀)
선정기준액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 원

※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 활용하여 계산 가능

- 지급일·금액 : 매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10만 원이 입금됩니다.

※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일부 가구의 경우 5만원 지급 가능

※ 2018년 9월 22~26일은 추석 연휴기간이므로, 9월 21일에 첫 아동수당 지급

2. 2018년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이 할 수 있습니다.
 - ※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다만 부모가 사망·관계단절 등인 경우 조부모(또는 외조부모) 등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가 됨
-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신청서 작성 방법” 참고
 -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
 -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부모 각각(한부모가정은 1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아동수당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안내” 참고)
- 관련 문의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 대상자 수(198만가구)가 많아 신청이 집중되는 초기(6.20~7.5)에는 상당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 6.20~9.30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9월분 급여부터 지급됩니다. (9월 말에 신청하면 처리 기간 등 고려 시, 11월에 9월분부터 소급 지급)
- 신청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 분산 및 불편 경감을 위해 신청자 분산 관련 지자체 안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가급적 연령별 기간에 따라 신청할 것을 권장

연령	0~1세	2~3세	4~5세	전 연령
신청기간	6.20~25	6.26~30	7.1~7.5	7.6~

* 0~5세 아동이 2명 이상이면 ‘첫째 아이’ 기준으로 신청

시청각장애인에게 방송수신기(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자료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지원팀 ☎ 02-2100-1293)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이 편리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수신기(TV)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급 받나요?

- 방송통신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전국 17개 지자체 지역의 주민등록상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 등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청각장애인에게 보급합니다.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우선보급(신청인 중 심사후 선정)

※ 2012년에서 2017년 사이 방송수신기를 보급 받은 기보급자는 제외

무엇을 보급 받나요?

- 장애인방송(자막방송/화면해설방송) 수신기능이 내장된 디지털 TV를 보급합니다.

※ '18년도 보급수량 : 시청각장애인용TV 15,000대

[참고 : '18년도 보급제품]



시각장애인용 기능

- 저시력장애인용 기능 제공
화면 부분 확대 기능
- 음성안내 기능 제공
전 메뉴 음성안내
- 전용 리모컨 제공
안내음, 속도, 음조 등 단축키 설정

청각장애인용 기능

- 자막/영상 분리(상·하단)
방송자막과 폐쇄자막 중첩 방지
- 자유로운 자막 위치 조절
실시간 자막 이동
- 전용 리모컨 제공
자막 크기, 분리 등 단축키 설정

어떻게 신청 하나요?

- 해당 시·군·구 주민센터 또는 시청각장애인용TV보급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018. 6. 1. ~ 7. 13 (※ 8월부터 순차적 배송 예정)

※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tv.kcmf.or.kr) 참조

어디로 문의 하나요?

- 시청각장애인용TV보급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 또는 전화 1688-4596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화기·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우리집 화재걱정 뚫!

(자료제공: 소방청 119생활안전과 ☎ 044-205-7663)



소방청 주택용 소방시설 화재초기 소방차 1대 효과 '소화기' 화재가 나면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우리집 화재걱정 뚫!

안녕하십니까?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6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화재가 나면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에서 불이 나면 누가 깨워줄까요?



오늘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하세요!
(단독경보형감지기)



- ✓ 전체화재 중 주택화재 발생률 18.2%
- ✓ 전체화재 중 주택화재 사망자 49.7%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소방서
(원스톱 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



National Fire Agency 119 소방청



참 고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자료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화재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

소화기

소화약제를 입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消火)에 사용하는 기구

※ 구입방법 : 인터넷 · 대형마트 ·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



설치대상

*단독주택(단독 · 다중 · 다가구), 공동주택(연립 ·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 즉, 소유주가 1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음, 즉, 소유주가 여러명

설치기준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방법

01

베이스
나사
본체

02

베이스를 천장에 나사로 고정

03

배터리 단자를 본체에 연결

04

본체를 베이스에 고정/돌리세요

관리방법 및 사용기한

- 압력계이지 녹색 확인
- 사용기한 10년
- 오작동시 리셋버튼 누르기
- 배터리 주기적 점검
- ※ 배터리 수명은 약 10년



2018년 6월 국정홍보만화 (담금주,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기)

담금주,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기



2018년 6월 국정홍보만화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포상금액: 신고대상 범죄에 따라 정액 지급(70만 원, 100만 원)
 지급대상: 신고자 누구든지 포상금 지급 (미성년자도 가능)
 신청절차: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후 여성가족부에 신고포상금 신청
 지급절차: 여성가족부가 사건처리결과 등 확인후 지급
 지급요건: 신고한 범죄가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